

[X.] 새로운 부속서 I은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부속서 I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대한 비합치 조치

한국의 유보목록

서설

1. 이 유보목록은 제7나.12조(비합치 조치)제1항 및 제7가.7조(비합치 조치)제1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7나.5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7가.3조(내국민 대우)

나. 제7나.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7가.4조(최혜국 대우)

다. 제7가.6조(현지주재)

라. 제7가.5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7나.12조(비합치 조치)제1항가호 및 제7가.7조(비합치 조치)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¹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²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개정의정서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개정의정서의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7나.12조(비합치 조치)제1항가호 및 제7가.7조(비합치 조치)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7나.12조(비합치 조치)제1항다호 및 제7가.7조(비합치 조치)제1항다호를

¹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그 조치는 중앙정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7나.12조제1항 및 제7가.7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7가.3조(내국민 대우), 제7가.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7가.6조(현지주재)에 대하여 취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7나.5조(내국민 대우), 제7나.6조(최혜국 대우)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가.6조(현지주재)와 제7가.3조(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7가.6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7가.3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7다-가(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다.

1. 분야 건설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21034호, 2025. 8. 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20730호, 2025. 1. 3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안전부령 제598호, 2025. 12.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건설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
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21408호, 2026. 2. 2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2026. 3. 2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 분야 운송 서비스 -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53조(법률 제20554호, 2024. 12.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국토교통부령 제35811호, 2025. 10. 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국토교통부령 제1538호, 2025. 12.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호, 2025. 12. 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 판매·정비·수리 및 폐기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및 봉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4. 분야 유통 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21216호, 2026. 4. 2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재정경제부령 제27호, 2026. 4.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법률 제20249호, 2024. 2. 1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국세청고시 제2024-41호(2025. 1.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5.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2(산업통상부고시 제2024-148호,
2024. 9. 19.)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2)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6. 분야 사업 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9817호, 2023. 10. 31.)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
 1072호, 2024. 11. 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한 인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7. 분야	도·소매 유통 서비스
관련업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약사법 제42조 및 제45조(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약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대통령령 제32089호, 2021. 10. 19.)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2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9호, 2021. 9. 7.) 의료기기법 제15조(법률 제20753호, 2025. 1. 3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총리령 제2060호, 2025. 10.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20138호, 2024. 1.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총리령 제2027호, 2025. 3. 19.)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총리령 제2077호, 2026. 1.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대통령령 제35720호, 2025. 8. 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 10)(총리령 제1934호, 2024. 1. 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법률 제20825호, 2025. 3. 1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5941호, 2025. 12.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총리령 제2038호, 2025. 7. 2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21141호,

2025. 11. 1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총리령 제2037호, 2025. 6.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화장품법 제3조(법률 제20901호, 2025. 4.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총리령 제2109호, 2026. 3.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또는

마.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포함) 공급 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분야 의약품 소매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약품 소매유통 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인은 약국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

9. 분야	운송 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법률 제20123호, 2024. 1. 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철도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인이 합작투자 계약 또는 운송 관련 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경우 그 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국가철도공단만이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0.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가.6조)
시장접근(제7가.5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3(법률 제21339호, 2026. 2.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의3(대통령령 제36309호, 2026. 5.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 4. 7.)
궤도운송법 제4조(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정부당국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한다.

11. 분야 운송 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해양수산부령 제 652호, 2024. 2. 5.)
도선법 제6조(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국제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대로 한국에 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는 한국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해운중개 서비스, 해운대리업 서비스와 선박 정비 및 수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2. 분야 운송 서비스 - 항공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조치 항공안전법 제7조 및 제10조(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항공사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20766호, 2025. 1. 3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및 제12조(국토교통부령 제1548호, 2025. 12. 30.)

유보내용 투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인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인은 해당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열거된 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13. 분야 운송 서비스 - 특수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항공안전법 제7조 및 제10조(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항공사업법 제30조(법률 제20766호, 2025. 1. 3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49조(국토교통부령 제1548호, 2025. 12.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항공기 사용 서비스 또는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강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그리고 항공관광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 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 그리고 항공순찰 및 관측을 포함한다.

14.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21339호, 2026. 2.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 4. 7.) 주차장법 제12조(법률 제21185호, 2025. 12. 2.) 도로교통법 제36조(법률 제21246호, 2025. 12. 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주차장 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며,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분야 쿠리어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항공사업법 제52조(법률 제20766호, 2025. 1. 3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국토교통부령 제1548호, 2025. 12.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법률 제21025호, 2025. 8.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및 제41조의2(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5. 12. 2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상업서류송달 서비스를 포함한 국제 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운송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16.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7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 8. 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기간통신사업 등록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만 부여된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은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않는다.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의 경우,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다음을 허용한다.

가. 의제외국인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퍼센트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퍼센트까지 보유한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 등록된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으로 국경 간 공중통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한국은 상업적 약정 없이 위성 설비³를 통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신호 전송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허용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고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다.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않고(그러나 스위치,

³ 이 서비스는 오직 위성에 의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신호의 전송에 필요한 방송사업자 간 중계 연결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위성 설비의 임대를 포함하나 위성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서비스는 국내 간 연결(위성에 의한 이러한 신호의 국내 영역으로부터 국내 영역으로의 전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법률 제16019호, 2018. 12. 24.)의 규정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 포함)를 말한다.

17.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공인중개사법 제9조(법률 제21024호, 2025. 8. 1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29조(법률 제19403호, 2023. 5. 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및 제25조(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8.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리스·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20753호, 2025. 1. 3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7조(총리령 제2060호, 2025. 10.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리스·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9.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21339호, 2026. 2.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국
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 4. 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0. 분야 과학조사 서비스 및 해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15429호, 2018. 3. 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않거나 지배하지 않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21.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
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17828호, 2021. 1. 5.)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설치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
격을 가지지 않은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그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
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증인은 그 공
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중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
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2.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노무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법률 제18923호, 2022. 6. 1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의2(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2(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 12.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노무 자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노무 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 포함)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3.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12(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변리사 서비스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한국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인은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24. 분야 전문직 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및 제23조(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법률 제20896호, 2025. 4.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감사 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5.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제20조 및 제20조의2(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법인세법 제60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대통령령 제36130호, 2026. 2. 27.)
소득세법 제70조(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대통령령 제36276호, 2026. 4. 23.)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 서비스 및 세무대리 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6. 분야 전문직 서비스 - 통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8, 제17조의13, 제19조 및 제25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업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만이 통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7.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145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29조(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5. 5. 3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8.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측량 및 지도제작 서비스(지적 측량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 미포함)
관련의무	현지구재(제7가.6조)
조치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21478호, 2026. 3. 17.) 건축사법 시행령 제22 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3조(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 9. 2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법률 제20553호, 2024. 12.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35889호, 2025. 1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36151호, 2026. 2. 2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21034호, 2025. 8. 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법률 제35947호, 2025. 12.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온천법 제7조(법률 제19028호, 2022. 11.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 및 지도제작 서비스(지적 측량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 미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분야	사업 서비스 – 전광판방송 서비스 및 옥외광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21572호, 2026. 4.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21018호, 2025. 8. 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4조(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옥외광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30.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 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 서비스 및 선원교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및 제36조(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7605호, 2020. 12. 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 7. 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선원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 142조 및 제143조(법률 제21054호, 2025. 9. 16.) 해운법 제33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13272호, 2015. 3. 2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임시파견) 서 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20년 1월 16일 현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대 상 업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관리사업운영자, 「선원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해양 및 수산업 관련 단체나 기관만이 선원인력공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31. 분야 조사 및 경비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20645호, 2025. 1. 7.)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35930호, 2025. 12. 2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안전부령 제512호, 2024. 8. 1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분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32.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조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3(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2020. 6. 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

33. 분야 운송 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항공사업법 제42조(법률 제20766호, 2025. 1. 3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국토교통부령 제1548호, 2025. 12. 30.)
항공안전법 제97조(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
해야 한다.

34. 분야 교육 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21조, 제23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제28조(대통령령 제36146호,
2026. 2. 27.)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21011호, 2025. 8.
1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35922호, 2025. 12. 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
(대통령령 제34300호, 2024. 3.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법률 제19430호,
2023. 6. 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
조, 제14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 정수의 50퍼센트 이상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한 경
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
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
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
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유보항목 35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 제외)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의료기사 및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기술대학 및 사내 대학을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수도권 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다.

대학(전문대학)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관의 인정을 취득하거나, 해당 외국 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획득한 외국 대학으로 제한된다.

그 밖의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된다.

35. 분야 교육 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조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
(법률 제19347호, 2023. 4.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
36220호, 2026. 3. 24.)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법률 제19588호, 2023.
8.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부고시 제2024-148호, 2024.
9.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법률 제19430호,
2023. 6. 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
14조(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
된다.

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외
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2) 지식·인력 개발 사업 관련 교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 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한국 내에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교육시설의 신설, 확장 및 이전은 제한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교육감은 비차별적으로 학원 수강료를 규율할 수 있다.

36. 분야 교육 서비스 -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률 제19174호, 2023. 1.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고용노동부령 제444호, 2025. 6. 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7.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수의사법 제4조,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법률 제20087호, 2024. 1. 23.)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조, 2026. 4. 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 및 제37조의12(법률 제20231호, 2024. 2. 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해양수산부령 제681호, 2024. 7. 4.) 민법 제32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수의사법」 제17조(법률 제20087호, 2024. 1. 23.)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동물병원에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법률 제20231호, 2024. 2. 6.)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수산생물질병검사센터에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산생물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8. 분야 환경 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물환경보전법 제62조(법률 제21368호, 2026. 2.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21065호, 2025. 10. 1.)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6217호, 2026. 3. 2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9.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가.3조)

조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20487호, 2024. 10. 22.)
공연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1호, 2026. 1.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법무부령 제1106호, 2026. 1. 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0.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전파법 제20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외국 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 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 또는 지국의 한국 내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41. 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9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나. 한국 국민이 아닌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5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42. 분야 유통 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축산법 제30조 및 제34조(법률 제20998호, 2025. 7. 22.)
종자산업법 제42조(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19752호, 2023. 10. 24.)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19490호, 2023. 6.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부고시 제2024-148호, 2024. 9.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99호, 2024. 12. 2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가.3조(내국민 대우) 및 제7가.5조(시장접근)는 한국이 WTO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

4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조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48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법률 제21572호, 2026. 4. 21.)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36031호, 2026. 1.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전송망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모든 이사는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한국 정부, 지방정부 또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한국 정부·지방정부 또는 한국의 인에 대해서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허가를 통하여 부여되는 반면, 전송망사

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다.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에게는 다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 나. 합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3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또는
- 다. 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투명성 목적상, 방송사업자가 종교적이거나 선교적인 내용을 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방송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 포함)은 합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한국 정부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예를 들어,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주식회사(MBC)]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언급된 범위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국 콘텐츠를 포함해야 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

하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그리고
-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사 간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 호에 언급된 범위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 가. 영화: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
- 나. 애니메이션: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그리고
- 다.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그러나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편성 시간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의 국내 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야별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60퍼센트 이하가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외국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 가.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보도·오락·드라마·영화·음악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 나. **의제외국인**이란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 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4. 분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⁴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21324호, 2026. 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대통령령 제36288호, 2026. 4. 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산업통상부 고시 제2024-148호, 2024. 9. 19.) 재정경제부고시(제2000-17호, 2000. 9. 28.) 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의2(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4호, 2026. 4. 16.)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⁴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열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45. 분야 에너지산업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⁵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21324호, 2026. 2.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한국가스공사 정관 제11조(2019. 7. 3.)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⁵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열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46.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